

4.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 따로 붙임

5. 참고사항

가. 예산조치 사항: 해당사항 없음

나. 규제사무 심의: 해당사항 없음

다. 성별영향 평가: 개선사항 있음[여성가족과-14635호(2020. 10. 30.)]

- 안 별표4 정책수혜자의 다양성을 고려하여 이용료 감경대상 확장
권고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한부모가족 감경대상 반영

라. 입법예고: 2020. 10. 19. ~ 11. 9.(21일간) / 의견 없음

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따로 붙임

울산광역시 중구 물놀이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중구 물놀이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한다.

-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이용료를 면제·감면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면제·감면 대상 및 내용은 별표 4와 같다. 단, 이용료 감면사유가 중복되는 경우 감면율이 높은 것을 적용하며, 워터슬라이드 이용료는 감면하지 아니한다.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이용료 반환) ① 납부한 이용료는 물놀이장 입장 전까지 반환할 수 있다.

- ② 물놀이장 입장 이후에는 이용료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천재지변 또는 관리자의 귀책사유로 시설을 이용할 수 없을 때에는 납부한 이용료를 전액 반환한다.

별표 3 및 별표 4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별표 3】

울산광역시 중구 물놀이장 시설 이용료(제7조제1항 관련)

(기준 : 일 / 사용료)

입 장 료			워터슬라이드
어린이(만5~12세)	청소년(만13~18세)	성인(만19세 이상)	이용료
2,000원	4,000원	6,000원	2,000원

【별표 4】

울산광역시 중구 물놀이장 시설 이용료 면제·감면(제7조제3항 관련)

구 분	면제·감면	대 상
울산광역시 중구 물놀이장 시설 이용료	면제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이용하는 각종 행사
	50/100 감면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이용일 현재 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3.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4.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5.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6.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7.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8.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9.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10.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 노인 1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1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1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2호에 따른 한부모가족 14. 그 밖에 구청장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0/100 감면	울산광역시장이 발급한 자원봉사자증을 소지한 본인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7조(이용료 징수 등) ①·② (생략)</p> <p>③ <u>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이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할 수 있다. 단, 이용료 감면사유가 중복되는 경우 감면율이 높은 것을 적용하며, 워터슬라이드 이용료는 감면하지 아니한다.</u></p> <p>1. <u>이용료 면제</u></p> <p>가. <u>국가·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이용하는 각종 행사</u></p> <p>나. <u>삭제</u></p> <p>2. <u>이용료 감면</u></p> <p>가. <u>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국가보훈대상자,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장애인, 노인, 이용일 현재 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 50/100</u></p> <p>나. <u>울산광역시장이 발급한 자원봉사자증을 소지한 본인 : 30/100</u></p>	<p>제7조(이용료 징수 등) ①·② (현행과 같음)</p> <p>③ <u>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이용료를 면제·감면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면제·감면 대상 및 내용은 별표 4와 같다. 단, 이용료 감면사유가 중복되는 경우 감면율이 높은 것을 적용하며, 워터슬라이드 이용료는 감면하지 아니한다.</u></p>

다. 그 밖에 구청장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50/100

④ 이미 납부한 이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이용료를 전액 반환할 수 있다.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 등의 사유로 물놀이장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2. 구청장이 시설의 긴급 보수 등 공익상의 필요로 이용을 취소 또는 정지한 경우

<신 설>

<삭 제>

제7조의2(이용료 반환) ① 납부한 이용료는 물놀이장 입장 전까지 반환할 수 있다.

② 물놀이장 입장 이후에는 이용료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천재지변 또는 관리자의 귀책사유로 시설을 이용할 수 없을 때에는 납부한 이용료를 전액 반환한다.

현행	개정안																						
<p>【별표 3】 울산광역시 중구 물놀이장 시설 이용료(제7조 관련)</p> <p style="text-align: right;">(기준 : 일 / 사용료)</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margin-top: 10px;"> <thead> <tr> <th colspan="3" style="text-align: center;">입 장 료</th> <th rowspan="2" style="text-align: center;">워터슬라이드 이용료</th> </tr> <tr> <th style="text-align: center;">어린이 (만5~12세)</th> <th style="text-align: center;">청소년 (만13~18세)</th> <th style="text-align: center;">성인 (만19세 이상)</th> </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2,000원</td> <td style="text-align: center;">4,000원</td> <td style="text-align: center;">6,000원</td> <td style="text-align: center;">2,000원</td> </tr> </tbody> </table>	입 장 료			워터슬라이드 이용료	어린이 (만5~12세)	청소년 (만13~18세)	성인 (만19세 이상)	2,000원	4,000원	6,000원	2,000원	<p>【별표 3】 울산광역시 중구 물놀이장 시설 이용료(제7조제1항 관련)</p> <p style="text-align: right;">(기준 : 일 / 사용료)</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margin-top: 10px;"> <thead> <tr> <th colspan="3" style="text-align: center;">입 장 료</th> <th rowspan="2" style="text-align: center;">워터슬라이드 이용료</th> </tr> <tr> <th style="text-align: center;">어린이 (만5~12세)</th> <th style="text-align: center;">청소년 (만13~18세)</th> <th style="text-align: center;">성인 (만19세 이상)</th> </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2,000원</td> <td style="text-align: center;">4,000원</td> <td style="text-align: center;">6,000원</td> <td style="text-align: center;">2,000원</td> </tr> </tbody> </table>	입 장 료			워터슬라이드 이용료	어린이 (만5~12세)	청소년 (만13~18세)	성인 (만19세 이상)	2,000원	4,000원	6,000원	2,000원
입 장 료			워터슬라이드 이용료																				
어린이 (만5~12세)	청소년 (만13~18세)	성인 (만19세 이상)																					
2,000원	4,000원	6,000원	2,000원																				
입 장 료			워터슬라이드 이용료																				
어린이 (만5~12세)	청소년 (만13~18세)	성인 (만19세 이상)																					
2,000원	4,000원	6,000원	2,000원																				
<p>〈신설〉</p>	<p>【별표 4】 울산광역시 중구 물놀이장 시설 이용료 면제·감면(제7조제3항 관련)</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margin-top: 10px;"> <thead> <tr> <th style="text-align: center;">구분</th> <th style="text-align: center;">면제·감 면</th> <th style="text-align: center;">대 상</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3" style="text-align: center; vertical-align: middle;">울산광역시 중구 물놀이장 시설 이용료</td> <td style="text-align: center;">면제</td> <td>국가·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이용하는 각종 행사</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50/100 감면</td> <td> 1. 이용일 현재 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3.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4.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5.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6.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7. 「특수입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8.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9.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10.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 노인 1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1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1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2호에 따른 한부모가족 14. 그 밖에 구청장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30/100 감면</td> <td>울산광역시장이 발급한 자원봉사자증을 소지한 본인</td> </tr> </tbody> </table>	구분	면제·감 면	대 상	울산광역시 중구 물놀이장 시설 이용료	면제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이용하는 각종 행사	50/100 감면	1. 이용일 현재 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3.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4.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5.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6.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7. 「특수입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8.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9.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10.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 노인 1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1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1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2호에 따른 한부모가족 14. 그 밖에 구청장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0/100 감면	울산광역시장이 발급한 자원봉사자증을 소지한 본인												
구분	면제·감 면	대 상																					
울산광역시 중구 물놀이장 시설 이용료	면제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이용하는 각종 행사																					
	50/100 감면	1. 이용일 현재 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3.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4.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5.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6.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7. 「특수입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8.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9.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10.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 노인 1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1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1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2호에 따른 한부모가족 14. 그 밖에 구청장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0/100 감면	울산광역시장이 발급한 자원봉사자증을 소지한 본인																					

근 거 법 규

□ 지방자치법

제136조(사용료)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의 이용 또는 재산의 사용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139조(사용료의 징수조례 등) ①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다만,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나 그 기관에 위임한 사무와 자치사무의 수수료 중 전국적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는 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준금액으로 징수하되,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금액으로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표준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조례로 가감 조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 국가보훈기본법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선양하고, 국가보훈대상자를 예우하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조에 따른 기본이념을 구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 또는 주민의 복지와 관련된 정책을 수립·시행하거나 법령 등을 제정 또는 개정할 때에는 국가보훈대상자를 우선하여 배려하는 등 적극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7조(고궁 등의 이용지원)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과 공원 등의 시설 이용료를 받지 아니하거나 할인할 수 있다.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3조(경쟁제한적인 법령 제정의 협의등) ①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사업자의 가격·거래조건의 결정, 시장진입 또는 사업활동의 제한, 부당한 공동행위 또는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등 경쟁제한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령을 제정 또는 개정하거나,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에 대하여 경쟁제한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승인 기타의 처분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관리번호	2020A 울산중구061		
정책명	울산광역시 중구 물놀이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소관부서	기관명	울산광역시 중구	
	부서명	혁신교육과	
	담당자명	오석원	전화번호 052-290-3663
성별영향평가서 제출날짜	2020년 10월 14일		
주요 성별영향평가 내용 (혁신교육과)	<p>본 개정안 '울산광역시 중구 물놀이장 관리 및 운영 조례'에 대해 성별영향평가법 제5조 제1항, 제6조에 근거하여 성별구분 또는 고정관념, 성별특성, 성별 균형 참여, 성별 통계 등 성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음.</p> <p>개정의 주요 내용은 국가유공자 등 보훈대상자를 법령에 따른 중구 물놀이장 시설 이용료 감면대상으로 명시, 납부한 이용료 반환 규정 정비임.</p>		
종합 검토 의견 (성별영향평가책임관)	<input type="checkbox"/> 개선사항 없음 <input type="checkbox"/> 자체개선안 동의 <input checked="" type="checkbox"/> 개선의견		
	<p>성별영향평가서 점검포인트 2에 따라 성별에 따른 신체적, 사회·문화적 차이 등을 고려한 정책 수혜·수급요건 등에 대한 개선의견임. 본 개정안 【별표 4】에 관한 개선의견으로, 울산광역시 중구 물놀이장 시설 이용자에 대한 다양성을 고려하여 입장료 감면대상 확장을 권고하는 바임.</p>		
	구분	해당 내용 (제개정 법령안)	개선안 (법령 수정안)
1	【별표 4】 울산광역시 중구 물놀이장 시설 이용료 면제·감면(제7조제3항 관련) 대 상 1. ----- 2. ----- 3. ----- 4. ----- 5. -----	【별표 4】 울산광역시 중구 물놀이장 시설 이용료 면제·감면(제7조제3항 관련) 대 상 1. ----- 2. ----- 3. ----- 4. ----- 5. -----	<p>정책수혜자의 다양성을 고려하여 이용료 감면대상 확장 필요</p>

	<p>6. -----</p> <p>7. -----</p> <p>8. -----</p> <p>9. -----</p> <p>10. -----</p> <p>11. -----</p> <p>12. -----</p> <p>13. -----</p> <p>14. 그 밖에 구청장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p>	<p>6. -----</p> <p>7. -----</p> <p>8. -----</p> <p>9. -----</p> <p>10. -----</p> <p>11. -----</p> <p>12. -----</p> <p>13. -----</p> <p>14. 「<u>울산광역시 저출산대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u>」 제2조제2호에 따른 다자녀가정</p> <p>15. 「<u>국민기초생활 보장법</u>」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p> <p>16. 「<u>한부모가족지원법</u>」 제4조제2호에 따른 한부모가족</p> <p>17. 그 밖에 구청장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p>	
--	--	--	--

<p>검토의견 반영계획서</p>	<p>2020년 11월 13일 까지</p>
-----------------------	-------------------------

「성별영향평가법」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합니다.

2020년 10월 30일

울산 중구 성별영향평가책임관

(담당자/연락번호 : 김윤진/052-290-4903)

혁신교육과장 귀하

성별영향평가 개선의견 반영계획서

관리번호	2020A 울산중구061			
정책명	울산광역시 중구 물놀이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소관부서	기관명	울산광역시 중구		
	부서명	혁신교육과		
	담당자명	오석원	전화번호	052-290-3663

개선의견에 대한 반영계획

1	<p>정책수혜자의 다양성을 고려하여 이용료 감경대상확장 필요</p> <p>14. 「울산광역시 저출산대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다자녀가정 15.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p> <p>16.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2호에 따른 한부모가족</p>	<input type="checkbox"/> 수용 <input checked="" type="checkbox"/> 일부수용 <input type="checkbox"/> 불수용	<p>물놀이장 운영시 많은 인원이 방문하지만 통상 2억이상의 적자가 발생하여 감면대상자 반영에 한계가 있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자녀가정은 모범도 없이 개별적으로 적용되다보니 감면에 대해 통일적인 규정도 없고 전국적으로 천차만별임. 통일된 규정이 있을시 추후 반영할 계획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는 기 반영되어 있음 차상위계층 반영은 대상자가 수시로 변동이 많아 운영시 감면 확인 등 불편한 사항이 예견되어 미반영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2호에 따른 한부모가족 규정은 감면규정에 반영하여 추진
---	--	---	--

2020년 11월 13일

혁신교육과장

성별영향평가책임관 귀하

울산광역시 중구 물놀이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미첨부 근거규정

- 「울산광역시 중구 조례 등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제1호
: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2. 미첨부 사유

- 「울산광역시 중구 물놀이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훈대상자를 감면대상에 명시하고 이용료 반환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 울산광역시 중구 물놀이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비용추계서 미첨부

3. 작성자

- 소 속: 혁신교육과
- 직 급: 지방행정주사
- 성 명: 오석원
- 연락처: (052)290-3671

의안 번호	1697	【울산광역시 중구 물놀이장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	------	---

1. 검토경과

-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0. 12. 3.(목)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 나. 위원회 회부일자 : 2020. 12. 3.(목)
- 다. 위원회 심사일자 : 2020. 12. 16.(수)

2. 개정이유

행정안전부·국가보훈처 「국가유공자 등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 규정 정비계획」에 따라 감면대상에서 누락되거나 불명확하게 규정된 보훈대상자에 대한 이용료 감면 규정을 정비하고 공정거래위원회 권고사항에 따라 물놀이장 이용료 반환규정을 정비하여 이용객의 권익 보호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국가유공자 등 보훈대상자를 법령에 따른 감면대상으로 명시함 (안 제7조 제3항, 안 별표4)
- 나. 이용자가 납부한 이용료 반환 규정 마련(안 제7조의 2)
 - 소비자 이익저해 지적에 따른 반환규정 정비

4. 참고사항

○ 울산광역시 중구 물놀이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별표 3】

울산광역시 중구 물놀이장 시설 이용료(제7조제1항 관련)

(기준 : 일 / 사용료)

입 장 료			워터슬라이드
어린이(만5~12세)	청소년(만13~18세)	성인(만19세 이상)	이용료
2,000원	4,000원	6,000원	2,000원